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연체자에 대한 대출정지 기간을 명확히하고,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수강생 중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게 수강료 감면 혜택을 주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에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대출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정지기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둘째, 관장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해교육, 정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에서의 학습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평생학습 참여자 중 저소득자·장애인·노인·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을 통해,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이들에게 좀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